별첨 1	사업비 편성기준

구분	편성기준	집행기준	증빙서류
인건비	• 당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 • 신청자 개인 또는 개인·법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• 원천징수세액, 4대 보험료 등은 제작비로 인정 (단, 고용주 부담금 제외) • 협약기간 내 한하여 소속 제작사 (개인)의 급여기준 따라 실지급액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되 복리후생 성경비(선물, 경조사 등)는 불인정	• 총사업비의 70%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(스태프 인건비 우선) • 2025년 최저시급 준수 의무 - 1시간 기준 시급 10,030원/ - 월급(209시간) 기준 2,096,270원 •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인 경우 소득세 등 원천징수(기타 8.8%, 사업 3.3%) 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 • 금액 불문 계좌이체 원칙	① 신분증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처리) ② 통장사본 ③ 이체확인증(입금확인증) ④ 참여인력 현황표(붙임2 참조) ⑤ 계약서 및 이력서(50만원 초과 시)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125,000원 초과 시)(국세/지방세 2건)
임차비	• 당해 제작에 소요되는 외부장비, 외부시설 이용료 등 순수 임차비 - 장비 : 촬영, 조명, 음향, 녹음, 운반비, 차량임차료 등 - 시설 : 녹음·편집시설 임차비 등 ※ 불인정 - 자가(내부) 시설 및 장비 이용, 사무실 운영(전기요금, 인터넷 사용료 등) - 제작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(장비 구입 및 수리 등) - 당해 제작과 관련되지 않은 임차비	• 금액 불문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원칙 •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간, 장비 등 임차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(기타 8.8% 적용)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	①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② 사업자등록증(계좌이체 시) ③ 통장사본(계좌이체 시) ④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시) ⑤ 견적서(30만원 초과 시) ⑥ 거래명세서(30만원 초과 시) ⑦ 계약서(100만원 초과 시) ※ 100만원 이상 시 ⑤, ⑥, ⑦ 필수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125,000원 초과 및 개인 지급 시)

불인정 공통사항
•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•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•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불량 영수증 • 사업비 전용 카드 또는 전용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•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•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•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진행을 한 경우 • 간이영수증(수기로 작성한 종이영수증), 해외결제(해외직구) 건 • 그밖에 진흥원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